
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주개 30321-1128	(전화: 731-6391)	시행상 특별취급						
보존기간	영구·(준영구) 10.5.3.1	시							
수신처 보존기간	1년	장							
시행일자	86.8	302							
보조 기관	건설관리국장 전결	협조 기관	경도통제영향경우 법무담당관 심사필 (고시안실사)						
	주택개발과장		도시계획과장						
	개발1계장								
기안책임자	김종천 (86.)	발	인						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 							
제목	사당제 4 주택개발 재개발구역 내 구역지정등에 관한 지적승인고시								
제 1 안 내부절제									
<p>1. 건설부고시 제 470호 ( 73. 12. 1 ) 로 구역 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55호 ( 82. 4. 26 ) 및 같은고시 제 364호 ( 85. 8. 22 ) , 같은고시 제 244호 ( 86. 6. 4 ) 로 구역 변경결정된 사당제 4 주택개발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(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)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(권한 위임)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(고시) 및 제9조 (도면의종류등) 제4항에의거 별안 (제2안) 과 같이 그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</p>									
첨부: 사당제 4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적승인도 1부									
제 2 안 고시안						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		호							
도시계획 (주택개발 재개발) 지적승인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책임자</td> <td>김종천</td> <td>제 2 안</td> </tr> <tr> <td>담당자</td> <td>김민준</td> <td>법무담당관</td> </tr> </table>		책임자	김종천	제 2 안	담당자	김민준	법무담당관
책임자	김종천	제 2 안							
담당자	김민준	법무담당관							
· 1. 건설부 고시 제470호 (73. 12. 1) 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55호 (82.									

4.26) 및 같은고시 제354호 (85.8.22), 같은고시 제244호 (86.6.4) 로  
 구역 변경결정된 사당제 4주택개량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 
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 
 8조 및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와 동작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  
 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6. 8. .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승인조서

구분	위치	면적 (m <sup>2</sup> )
주택개량재개발구역	동작구 사당동 산 14번지 및 17번지 일원	185,028

나. 승인 지형도: 별첨 (생략)

제3안 시행안

수신: 총무처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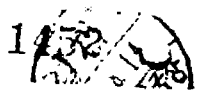
계유: 관보게제외되

1. 저희시 사당제 4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 
 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  
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고시안 사본 2부

제4안 시행안

수신: 건설부장관



참조 도시개발과장

제목 서울시 도시계획 (주택개량재개발구역) 변경결정에 따른 지적승인고시  
(처리보고)

1. 건설부고시 제470호 (73.12.1)로 구역 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55호  
(82.4.26) 및 같은고시 제364호 (85.8.22), 같은고시 제244호 (86.6.4)로  
구역변경결정된 해당 제4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

2. ~~서울시 고시 제180호 (73.12.6) 지적승인고시도를 근거로 하여~~ 도시  
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8  
조 및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제  
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내용을 보고합니다.

첨부 고시안 사본 및 지형도사본 각1부

제5안

수신 등각구청장

참조 주택과장,

제목 도시계획 (주택개량재개발구역) 변경결정에 따른 지적승인고시 (통보)

1. 귀구관내 해당제4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  
에 의거 지적승인고시하였기 그내용을 통보하니

2.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보이고 도시계획업  
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.

첨부 고시문 사본 및 지형도 사본 각2부. 끝.

1459

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 (주택개량재개발구역) 지적 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470호 (73.12.1)로 구역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 155호 (82.4.26) 및 같은 고시제364호 (85.8.22) 같은 고시 제244호 (86.6.4)로 구역변경결정된 해당 제4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를 승인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와 동작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인다.

1986. . .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승인조서

구 분	위 치	면적 (m <sup>2</sup> )
주택개량재개발 구역	동작구 사당동 산14번지 및 17번지 일원	185,028m <sup>2</sup>

나. 승인지형도 : 별첨 (생략)